

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3. . .
발 의 자	김정도 의원 외 7명

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정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3. . .

발 의 자: 김정도 · 김영길 · 김원섭 · 이명희
이정희 · 장세구 · 정지원 · 허민근
의원(8명)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, 「예비군법 시행령」 제32조

2) 「예비군법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」 제5조

나. 부서검토: 안전재난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(붙임)

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훈련장”이란 제5837부대 1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.
2. “예비군”이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.
3. “차량”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.

제3조(경비의 지원 등) ① 구미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,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예비군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」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예비군법」

제14조의3(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예비군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,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□ 「예비군법 시행령」

제32조(예비군의 육성·지원)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·운영 및 유지
 2.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
 3.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
 4.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·수송·통신·의료·장비·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
 5.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,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,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,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.

□ 「예비군법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」

제5조(예비군 육성·지원사항의 범위)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.

[별표 1]

예비군 육성·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

1~4. (생략)

5.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, 민·관·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가. 예비군 후생·복지장구 확보의 지원

나. 작전 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·격려

다.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

라.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

마.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

바.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

검 토 의 건 서

부서명 : 안전재난과

조 례 명	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
☐ 검토 사항 ○ 관련 법령 : 예비군법 제14조의3,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등 ☐ 주요 사항 ○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 지원 ☐ 검토 결과 ○ 예비군 훈련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우며, 추후 칠곡군으로 예비군 훈련장 이전계획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☐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 ○ 기대효과 : 구미시 예비군대원에게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 제공 ○ 소요예산 : 120백만원	

구미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예비군법 제14조의3(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)
-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(경비의 지원 등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비용추계기간 : 2023년 ~ 2027년(5년)
-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예산 : 120,000천원
 - 산출기초 : 120일 * 2대 * 500,000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120	120	120	120	120	6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					
도 비						
시 비	120	120	120	120	120	600
민 간						
기 타						
합 계	120	120	120	120	120	600

5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차후 사업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 재정 소요액도 달라질 수 있음

6. 작성자

-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조병용(☎054-480-6749)